

『經國大典』 度僧 항목의 성립과 그 의미*

양혜원**

1. 머리말
2. 『경국대전』 度僧 항목의 성립 과정
3. 도승 항목의 복합적 구성과 4개 조문의 원형
 - 1) 도승 항목 복합적 구성의 원인
 - 2) 도승 항목 4개 조문의 원형
4. 『경제육전』과 『경국대전』 도승 내용의 차이
5. 도첩 발급 조문의 성격과 度牒式의 의미
6. 맺음말

1. 머리말

본고는 『經國大典』 『禮典』 度僧 항목의 구성 및 정확한 조문을 검토하고, 도승의 度牒 발급 조문 및 그와 쌍을 이루는 度牒式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度僧’이란 국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승을 배출하는 제도이다. 중국 北魏 무렵부터 시원이 보이는 도승제는, 이를 통해 출가할 경우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역을 면제받는 존재로 인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었으며 그 제도의 마지막 운영은 조선전기인 16세기까지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도승제를 운영하는 방식은 시대나 왕조마다 차이가 있었다. 조선의 경우 고려후기 도첩제 개혁 방향을 계승하여 도승을 법전에 반영하고,¹⁾ 조선

* 본고는 양혜원, 2017a 『조선초기 법전의 ‘僧’ 연구』,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III장 2절 부분을 이후 후속 연구들을 반영하여 대폭 보완, 수정한 글이다.

**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전임연구원.

의 첫 번째 법전인 『經濟六典』에 수록하였음은 물론²⁾ 두 번째 법전인 『經國大典』에도 하나의 항목³⁾으로 성립해 있음을 볼 수 있다. 『경국대전』 「예전」 도승 항목에서와 같이 도승에는 도첩의 발급이 종종 수반되어 흔히 이 제도를 '度牒制'라고도 부른다.⁴⁾

도승의 결과로 발급되는 도첩은 흔히, 국가에서 불교의 출가자에게 발급하는 신분증명서 정도의 의미로 설명되기도 하나, 이는 조선 도승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닐 뿐더러 이 설명으로 그 제도적 함의를 충분히 파악하기도 어렵다. 주지하다시피 도승의 결과로 발급되는 도첩은 役의 면제를 보장하는 문서이다. 전근대사회에서 역은 신분과 연동되는 문제이며 국가 통치 질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조선은 개국 후 체제 정비 과정에서 의욕적으로 법전을 편찬하였다. 그 결과로 조선 통치 질서의 기본 틀이 되는 『경국대전』이 완성되었다. 『경국대전』에는 불교 관련 사안을 직접 거론하는 조문이 약 23개조 수록되어 있는데⁵⁾ 그 중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내용은 단연 도승과 관련한 조문이었다. 개국 당시 僧⁶⁾

1) 양혜원, 2013 『고려후기~조선전기 免役僧의 증가와 度牒制 시행의 성격』 『韓國思想史學』 44, 30-31면.

2) 양혜원, 2017b 『『경제육전』 도승·도첩 규정으로 본 조선초 도승제의 의미』 『韓國思想史學』 57.

3) 학계에서 『경국대전』의 법문을 위계에 따라 어떻게 인용할 것인지 용어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이에 대한 고민의 반영으로 鄭肯植, 2009 『『經國大典註解』의 編纂과 그 意義』, 鄭肯植·田中俊光·金泳奭, 『譯註 經國大典註解』, 韓國法制研究院, 18면 각주 51)에서, “잠정적으로 ‘典’ 아래에 유사한 내용의 법문을 모은 것을 ‘項目’, 항목 아래에 ‘○’로 구분한 개별 법문을 ‘條文’...으로 표현하기로” 하고 있어, 본고에서도 이를 따라, ‘도승 항목’ 아래 개별 ‘조문’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4) 조선의 도첩제와 관련한 대표적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李鍾英, 1957 『이조시대의 度牒제도에 대하여』, 연희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韓祐勗, 1957 『麗末鮮初의 佛敎政策』, 『서울大論文集』 6(1993 『儒敎政治와 佛敎』, 일조각 재수록); 이승준, 2000 『朝鮮前期 度牒制의 推移』, 한국고원대 석사학위논문; 押川信久, 2006 『『經國大典』度牒發給規定の成立』 『年報朝鮮學』 9; 양혜원, 2013 앞의 논문; 민순의, 2016 『조선전기 도첩제도(度牒制度) 연구』, 서울대 종교학과 박사학위논문; 양혜원, 2017a 앞의 논문.

5) 양혜원, 2017a 앞의 논문, 《부록 2》.

6) ‘僧’은 불교의 출가 수행자로, 오늘날 흔히 ‘僧侶’라고 부르나 조선시대에 이들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는 ‘僧’ 혹은 ‘僧徒’였다. ‘승려’는 19세기 말 유입된 일본식 표현이다. 따라서

이 민의 3할⁷⁾이라고 지적될 정도로 승의 규모가 과다하였기 때문에, 조선은 승을 출가시키는 법을 『경국대전』에 수록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도승’이다. 또한 도승 항목에서 도첩 발급 조문에 대응하는 문서식이 ‘예전’ 말미에 수록된 ‘도첩식’이다.

『경국대전』 편찬 이전 사용되던 『경제육전』에도 도승 관련 조문이 다수 수록되어 있었다. 『경제육전』은 현전하지 않으나 실록에 인용된 조문들을 통해 그 내용을 추정할 수 있다.⁸⁾ 그런데 『경제육전』에 수록된 도승 관련 조문에서는 도첩 발급 대상을 庶人과 賤口를 배제한 소수의 상층 양반 자제로 제한하고 있었음이 밝혀진 바 있다.⁹⁾ 이는 조선 초 도승 규정이 신분적 함의가 강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경제육전』은 『경국대전』이 반포되면서 사용이 중지되었다. 『경국대전』은 세조가 편찬을 명한 이래 누차의 개정을 거쳐 성종 15년(1484) 최종 완성되었다. 『경국대전』은 조선의 기본 법전으로, 완성 이래 조선후기까지 내내 祖宗之成憲으로 존중받았으며 조선 통치의 규범으로 기능하였다. 건국 후 통치체제 정비 과정에서 장기간 숙고의 결과로 완성된 이 법전은 신왕조 조선의 성격을 법제적으로 압축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경국대전』 도승의 내용이 어떻게 규정되는지 살피는 것은 『경제육전』과 비교하여 건국 후 백 년이 되어가는 조선에서 불교계에 대한 인식의 단면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고는 최근 이루어진 조선 초 법전 및 도승 규정 관련 연구 성과의 연장선에서, 『경제육전』에서 규정하는 위와 같은 도승이 『경국대전』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피고자 한다. 『경국대전』은 다수의 책이 현전하므로 도승 항목의 조문이 명확하다고 여기기 쉽다. 그러나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경국대전』의 개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조문에 대한 판본간 교감을 결여하여 원전의 誤字를 잘못 인용하는 등 치명적 오류의 연구 결과가 양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본고에서는 사료용어로서 ‘僧’ 혹은 ‘僧徒’를 사용하기로 한다.

7) 『太祖實錄』 권7, 태조 4년 2월 19일 癸未.

8) 『경제육전』 편찬 및 그 전체 조문 복원을 위한 연구 성과는 양혜원, 2017a 앞의 논문, 97-104면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재론하지 않는다.

9) 양혜원, 2017b 앞의 논문, 144-148면.

는 古書로서의 『경국대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현상으로, 이러한 연구들은 제도사 연구의 근거가 되는 법전의 조문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차적으로 『경국대전』 판본에 대한 이해 위에 을사대전 완성 당시인 성종 15년 도승 항목의 명확한 구성과 조문을 확인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다음으로 확정된 도승 항목의 조문을 토대로 내용을 분석하고, 도승 결과로 발급되는 문서인 도첩의 성격을 살펴본 후, 그 서식인 도첩식을 검토하여 『경국대전』 도승의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경국대전』 度僧 항목의 성립 과정

조선의 도승제는 고려말 관련 규정의 연장선에서 논의되고 성립되었다.¹⁰⁾ 조선 건국 후 누차에 걸친 법전의 개수 과정에서도 누락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록되는 조항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경국대전』 도승 내용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전에 수록된 도승 항목의 내용을 시간 순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국대전』 이전에 시행되었던 법전인 『경제육전』에 수록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도승 관련 조문을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¹¹⁾

『經濟六典』 度僧

1. 양반 자제로 승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부모나 친족이 사유를 갖추어 적어 승록사에 신고하고, 승록사는 예조에 보고하며, (예조가) 왕에게 아뢰어 허락을 받은 후에 정전 오승포 100필을 납부하면, 도첩을 주고 비로소 출가를 허용한다.

10) 고려말 도첩제 관련 연구는 孔龜泳, 1970 『高麗朝의 寺院制度研究: 特히 考試制와 度牒制를 中心으로』 『論文集』 1, 대전농업고등전문학교; 崔鎭錫, 1972 『高麗後期 度牒制에 對하여』 『慶熙史學』 3; 崔鎭錫, 1981 『高麗末朝鮮初 度牒制의 變遷』 『인덕공전논문집』 1 참조.

11) 『經濟六典』 수록 度僧 조문 및 관련 내용은 모두 양혜원, 2017b 앞의 논문을 전제하였다. 도승 조항 분류 근거 및 조문 추출 과정 등은 이 논문에 상세하며 내용이 번다하므로 본고에 다시 옮기지 않는다.

[兩班子弟自願爲僧者 父母親族具錄辭因 告僧錄司 轉報禮曹 啓聞取旨然後 納丁錢五升布一百匹 給度牒 方許出家.]

2. 무릇 僧과 尼는 재행을 시험하여 도첩을 주고 삭발하도록 허락한다.[凡僧尼 試才行給度牒 許令削髮.]

* ()는 필자주

위 도승 규정은 태조 6년 조선의 첫 번째 공식 법전으로 편찬된 『元六典』부터 수록되어 『경제육전』 체제 내내 유지된 조문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양반 자제’ 중에서 ‘스스로 승이 되기를 원하고’ → ‘부모나 친족의 허락을 얻어 僧錄司에 신고, 禮曹에 보고하여 왕의 허락을 득하고’ → ‘丁錢의 납부’를 요구하였다. 여기에 도승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才行을 시험’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이 도승법은 높은 신분 기준과 까다로운 절차, 재력, 재행 등의 요건을 복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었다.¹²⁾

『경국대전』의 해설서인 『經國大典註解』¹³⁾에서는 ‘度僧’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풀고 있다.

度僧：度化也. 化民爲僧也.¹⁴⁾

‘度’는 ‘化’하는 것, 즉 바꾸다, 변화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度僧’이란 ‘민을 바꾸어 僧으로 만든다’는 뜻이 된다.¹⁵⁾ 이렇게 보면 『경국대전』에 실린 도승 항목의 의미는, ‘민’을 ‘승’으로 바꾸는 제도적 절차를 수록한 것이 된다.

12) 위의 논문, 153-154면.

13) 1554년 간행된 『경국대전』의 주석서.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鄭肯植, 田中俊光, 金泳奭, 2009 『譯註 經國大典註解』, 한국법제연구원, 해제 참조.

14) 『經國大典註解』(後集) 『禮典』 度僧.

15) 鄭肯植, 田中俊光, 金泳奭, 2009 『譯註 經國大典註解』, 한국법제연구원, 221면에서는 ‘化’를 ‘교화’로 해석하였다. ‘化’는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된다는 뜻을 갖는 글자인데, 흔히 ‘변화’ 혹은 ‘교화’ 등의 의미로 쓰인다. ‘度僧’의 경우, 조선시대 법전에서 民을 ‘교화’하여 ‘僧’으로 만든다고 해석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된다. ‘化’의 의미를 그대로 취하여 법적으로 ‘民’에서 ‘僧’으로 바꾸는 것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지 않은가 한다. 이외에 불교 용어로서 ‘度化’는 亡靈을 제도하여 교화한다는 의미가 있으나,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없다.

조선 만세의 성법으로 불리는 『경국대전』 『禮典』에도 ‘도승’이 하나의 항목으로 성립하여 수록되고 있다. 『경국대전』 최종 완성본인 이른바 을사대전은 근래에 규장각 등 여러 학술 웹사이트에서 원본 이미지 등을 제공하고 있어 인터넷 열람이 용이한 편이다.

그러나 현재 여러 사이트 혹은 영인본 자료로 『경국대전』이라는 書題 아래 제공되는 條文들을 그대로 수용해서는 곤란하다. 그간의 『경국대전』 관련 연구들은 ‘현재 모든 판본은 을사대전의 판본으로 내용이 동일하다’는 전제를 검증 없이 당위적으로 수용하여 연구를 진행해 온 경향이 있어 왔으나, 최근 연구를 통해 현존하는 『경국대전』 판본은 다음의 두 가지 층위가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¹⁶⁾

첫째는 『경국대전』이 최종 완성되기까지의 기간인 세조~성종 15년까지의 개정 시행 단계별 간행본들이다. 『경국대전』은 최종 완성까지 여러 차례의 개정 간행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2007년 보물 제1521호로 지정된 『경국대전』이 성종 2년(1471, 신묘년)에 시행된 신묘대전임이 밝혀지면서,¹⁷⁾ 『禮典』만 있는 零本이기는 하나 최종 완성본으로서 을사대전 이전의 간행본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¹⁸⁾

둘째는 『경국대전』 내용 수정을 금지하여¹⁹⁾ 법전 전체 조문을 고정한 을사대전의 다양한 판본들이다.²⁰⁾ 을사대전은 성종 15년(1484) 편찬되어 성종 16년(1485, 을사년)에 시행된 『경국대전』의 최종 완성본이다. 학계에서 종종 참고되는 대표적 자료들은 대부분 17~18세기 간행본들이다. 그러나 이 책들은 성종

16) 양혜원, 2018a 『『經國大典』 판본 연구』 『奎章閣』 53. 학계에서 널리 참고되는 『경국대전』 판본 및 참고 사이트, 영인본, 번역본 등에 대한 소개와 분석은 160-166면 참고.

17) 『경국대전』 간행의 구체적인 단계 및 명명 기준과 관련하여 양혜원, 2017c 『『經國大典』 개정판본의 시행 단계 재검토: 보물 제1521호 『經國大典』 간행년 판정을 중심으로』 『奎章閣』 50, 338-347면.

18) 일반적으로 『경국대전』이라 하면 을사대전을 지칭한다. 본고에서도 마찬가지이되, 『경국대전』 내의 개수 간행 단계를 구별하기 위한 경우에는 각각 ‘신묘대전’과 ‘을사대전’으로 구분하여 지칭하기로 한다.

19) 『成宗實錄』 권165, 성종 15년 4월 8일 甲子: 『經國大典』 『禮典』 雜令 “官吏不謹守成法 輒以己意輕改舊章者 依律論.”

20) 『경국대전』의 판본 층위 및 다양한 판본 종류에 대하여 양혜원, 2018a 앞의 논문 참조.

15년 『경국대전』의 편찬이 완성된 시점으로부터 100년 이상, 심지어 3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뒤 간행되었다. 때문에, 15세기 시행되던 조문이 사문화하여 17-18세기 간행 당시 틀린 글자를 교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조선후기 간행된 『경국대전』은 15세기 후반 완성된 『경국대전』 조문의 원형을 보장할 수 없다.²¹⁾

즉, 『경국대전』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단계별 간행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경국대전』은 시행년 간지를 기준으로 명명하는 학계의 관행이 있는데(아래 <표 1>²²⁾ 참조), 신묘대전과 을사대전은 편찬·간행 및 시행에 있어 14년 정도의 시간적 차이가 있다.

<표 1> 간행 단계별 『경국대전』의 명칭과 판본

왕	편찬·간행 연도	시행 연월일	이칭
세조	세조 6 『戶典』 세조 7 『刑典』	세조 6. 7. 17~ 세조 7. 7. 15~	-
예종	예종 1 (1469, 己丑年)	성종 1. 1. 1 ~ (1470, 庚寅年)	庚寅大典
성종	성종 1 (1470, 庚寅年)	성종 2. 1. 1 ~ (1471, 辛卯年)	辛卯大典
	성종 4 (1473, 癸巳年)	성종 5. 2. 1 ~ (1474, 甲午年)	甲午大典
	성종 15 (1484, 甲辰年)	성종 16. 1. 1 ~ (1485, 乙巳年)	乙巳大典

도승의 항목은 『禮典』에 수록되어 있는데, 다행히 신묘대전은 『예전』만 남아 있는 영본이라 을사대전의 도승 항목과 비교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도승·도첩 관련 연구들은 을사대전 도승 항목에 수록된 조문을 기준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도첩을 받기 위한 절차, 두 번째는 이른바 僧科로 불리는 選試 관련, 세 번째는 住持 임용과 범죄 처벌 관련, 네 번째는 주지가 주석했던 절의 재산 파손과 보상에 대한 조문들이 수록되어 있다(<표 2> 참조).

그런데 필자는 을사대전 도승의 네 가지 조문 내용을 보면서 항상 이상하다는

21) 을사대전의 여러 판본의 특징 및 신뢰도 검토는 위의 논문, 173-187면 참조.

22) 본고 <표 1>은 위의 논문, 356면의 <표 4>를 약간 편집한 것이다.

생각을 해왔다. 『경국대전주해』에서도 설명하였듯 ‘도승’이란 ‘민을 승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규정이므로 해당 조항에는 그 절차만을 수록하고 있어야 한다. 『경국대전』 도승의 첫 번째 조문 내용이 그것이다. 즉, 을사대전 도승 항목에 수록된 조문 넷 중 ‘도승’의 의미에 부합하는 내용은 도첩을 받는 절차를 규정한 첫 조문뿐인 것이다. 나머지 선시, 주지 임용, 주지가 주석했던 절의 재산 파손과 보상 등의 조문은 ‘度僧’에는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을사대전은 왜 2~4의 조문을 도승조에 함께 수록하고 있을까?

이러한 의문은 신묘대전을 확인하면서 해소되었다. 신묘대전 「예전」의 도승 항목을 살펴보면 을사대전과 그 조문 구성이 다르다는 사실을 단번에 알 수 있다. 아래의 <표 2>를 보자.

<표 2> 辛卯大典과 乙巳大典 「禮典」 度僧 항목 비교

辛卯大典 「禮典」 度僧	乙巳大典 「禮典」 度僧
1. 승이 된 자는 3개월 이내에 선종이나 교종에 신고하여 불경 외우기를 시험하고 【『심경』 『금강경』 「살달타」】 본조(예조)에 보고하여 【사천은 본래 주인이 원하는 바에 따른다.】 임금에게 보고하여 정전을 거두고 【정포 30필】 도첩을 발급한다. 【석 달이 지나면 족친이나 이웃이 관에 신고해서 환속시켜 (역에) 뽐히게 한다.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함께 죄준다. 〇도첩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은 ‘현대관방패면품’로 논한다.】	1. 승이 된 자는 3개월 이내에 선종이나 교종에 신고하여 불경 외우기를 시험하고 【『심경』 『금강경』 「살달타」】 본조(예조)에 보고하여 【사천은 본래 주인이 원하는 바에 따른다.】 임금에게 보고하여 정전을 거두고 【정포 30필】 도첩을 발급한다. 【석 달이 지나면 족친이나 이웃이 관에 신고해서 환속시켜 (역에) 뽐히게 한다.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함께 죄준다. 〇도첩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은 ‘현대관방패면품’로 논한다.】
	2. 선종과 교종은 3년에 한 번 選試를 치른다. 선종은 『전등』 『염송』을, 교종은 『화엄경』 『십지론』을 시험하여 각각 30명씩 뽑는다.
	3. 여러 寺의 주지는 양종(선종과 교종)에서 몇 사람을 천망하여 본조(예조)에 보고하고 이조에 공문을 보내면 뽑아서 임명해 보내되, 30개월이면 교체한다. 만일 (주지가) 죄를 지은 바가 있으면 양종이 본조(예조)에 보고하여 사실을 조사하여 죄를 다스린다. (주지가) 간음을 범한 자는 천거한 승도 함께 연좌시킨다.
	4. 주지 교체 시에 맡은 것을 인수인계한다. 깨지거나 잃어버린 물건이 있으면 값을 징수한다.

※ ()는 필자 주.

※ 조문 원문은 본고 3장 참조.

위 <표 2>에서 양쪽 칸의 보통 글씨는 신묘대전과 을사대전 『예전』 도승 항목의 大字 조문이며, 【 】에 삽입된 내용은 小字雙行의 註이다. 편의상 조문의 순서대로 1~4까지의 번호를 붙였다.

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묘대전 『禮典』 度僧과 을사대전 『禮典』 度僧을 비교해 보면, 내용상 큰 차이를 보인다. 즉, 성종 1년 편찬된 신묘대전 도승에는 도첩을 받기까지 절차를 규정한 조문만 실려 있으며, 이는 성종 15년 편찬된 을사대전 조문 1과 완전히 일치한다. 『경국대전』의 초기 형태인 신묘대전에는 오직 절차에 따라 도첩을 주고 도승시키는 조문만 실려 있어 ‘도승’이라는 항목의 내용에 충실함을 볼 수 있다. 즉, 도승 항목의 원래 구성은, 흔히 알려진 을사대전 구성과 달리, ‘도승’의 의미대로 민을 승으로 만드는 절차만을 수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랬던 것이 성종 15년 편찬된 을사대전에서 애초의 도승 항목에 없었던 조문 2~4를 덧붙여 수록하여, 도첩 발급 외에 僧政의 다양한 규정을 포함한 복합적 조문 구성을 이루게 된 것이다.

3. 도승 항목의 복합적 구성과 4개 조문의 원형

1) 도승 항목 복합적 구성의 원인

신묘대전과 달리 을사대전에서 도승 항목이 위와 같이 복합적 구성으로 이루어진 까닭은 무엇일까? 도승 항목의 내용이 왜 이런 변화를 보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실록에 전혀 드러나지 않으므로 정확히 알기는 힘들다. 왜 을사대전과 같이 복합적 형태로 도승 항목이 형성되었는지 알기 위해 도승 각 조문의 성립 과정을 추적해 보기로 한다.

우선 추가된 2~4 조문이 을사대전에서만 보이는 까닭에 대해, 이 조문들이 신묘대전 이후 성립하였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해당 조문들이 신묘대전 이후에 만들어져서 을사대전에 수록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조문의 성립 시기를 찾아보자.

첫 번째로, ‘選試’와 관련한 조문 2를 살펴보자.²³⁾ 선시는 흔히 僧科로 알려져 있다. 세속의 관리를 科擧를 통해 선발한다면, 불교 교단의 관리인 僧官은 승을 대상으로 한 선시를 통해 선발하였다. 그런데 이 선시는 을사대전에서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도첩과 선시의 법이 국초부터 육전에 실려 있다는 기록²⁴⁾과 같이 도첩과 선시는 『경제육전』 단계에서부터 이미 별개의 조문으로 수록되어 있었다. 우선, 도첩을 주는 법은 위에서 『경제육전』 도승 조문 1, 2를 통해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이 『경제육전』 도승 1, 2 조문은 내용상 이후 『경국대전』 도승 조문 1로 변화하여 이어지고 있다.

선시에 대한 규정 역시 『경제육전』에서 보이고 있다.²⁵⁾ 불교의 선시는 조선이 개창된 후 식년마다 꾸준히 치러졌으며, 그 운영에 대한 『경제육전』의 규정 ‘抄選과 入選의 2단계 시험을 보이며 최종 선발은 조선의 1/3만 뽑는다’는 내용이 『경국대전』에까지 원칙의 큰 변동 없이 지속되었다.²⁶⁾ 즉 도첩을 주는 조문과 같이 이 『경제육전』의 선시 규정은 신묘대전이나 을사대전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며, 그 선시 규정의 원리가 을사대전 도승의 조문 2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을사대전 도승 항목의 조문 2는 을사대전 단계에서 새로 추가된 조문이라 보기 어려우며 이미 신묘대전 이전부터 존재하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주지의 임명 등과 관련한 을사대전 조문 3을 살펴보자. 이 조문은 실록에서 이 『경제육전』 조문을 인용하는 기사를 찾기 어렵다. 대신 이 조문의 성립과 관련한 세종 후반의 기사를 찾을 수는 있다. 다음을 보자.

가) 의정부에서 吏曹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禪宗과 教宗 寺社의 住持를, 그 宗에서 戒行이 있는 자로 뽑게 하소서. 한 번에 3인을 천망하고 吏曹에 보

23) 도승 조항 조문 2의 성립 및 그 구체적 내용 분석은 양혜원, 2019a 『15세기 승과(僧科) 연구』 『韓國思想史學』 62 참조.

24) 『成宗實錄』 권262, 성종 23년 2월 3일 甲辰.

25) 양혜원, 2019a 앞의 논문, 68면에서 제시한 『경제육전』 『禮典』 選試 관련 규정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1. 各宗當抄選之時 多至七八十 少不下四五十. 2. 當試年 選其精於學術者 升之僧錄司. 僧錄司更考其選 然後移送禪教二宗. 禪教各宗 依舊抄選 入選取三分之一 其入格者 定數施行.”

26) 위의 논문, 83면.

고하여 임명하게 하되 임기는 30달로 한정하여 교체하소서. 주지가 법을 범한 것이 있는 경우 각기 그 宗에서 탄핵하여 예조에 보고하고 죄를 논하여 파출토록 하소서. 범죄가 중한 자는 천망하여 보고했던 僧도 또한 아울러 죄를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²⁷⁾

위 기사 가)는 세종 29년에 의정부에서 吏曹의 건의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다. 兩宗 주지를 임명하는 방식과 주지의 임기, 주지가 법을 어긴 경우의 처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을사대전 『예전』 도승의 조문 3과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곧 조문 3은, 이 세종 29년의 수교가 조문화하여 『경국대전』에 수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신묘대전은 성종 1년에 편찬되었으므로, 조문 3 역시 신묘대전 이전부터 있던 규정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을사대전 조문 4를 보자. 조문 4는 공교롭게도 언제 형성된 조문인지 실록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주지들이 사찰 재산을 전횡하는 문제는 고려 말부터 종종 제기되던 폐단이였다.

나) 僧選·僧職의 법이 세상에 성행하게 됨에 따라, 명예와 이익을 탐하는 무리들이 앞을 다투어 각 사찰의 住持를 희망하여, 전토의 조세와 노비의 공납을 私用으로 하여, 불의의 일을 자행하여 온 것은 그 유래가 오래인 것입니다.²⁸⁾

위 기사는 세종 20년의 사간원 상소의 내용이다. 상소에서 비판하는 것과 같이, 주지가 사찰 재산을 착복하고 전횡하는 일은 번번이 지적되는 불교계의 폐단이였다. 세종 6년의 승록사 혁파와 종파 감축이라는 큰 결단이, 흥천사 주지 등 고위 승직자 혹은 주지의 사찰 비용 유용 사건을 빌미로 시작되었음을 상기한다면²⁹⁾ 사찰의 재정을 전담하는 주지에 대한 단속 요구가 있어왔음은 짐작할

27) 『世宗實錄』 권116, 세종 29년 6월 19일 庚辰.

28) 『世宗實錄』 권82, 세종 20년 7월 9일 辛卯.

29) 『世宗實錄』 권23, 세종 6년 2월 14일 庚申. 이는 흥천사 주지 宗眼이 국가에서 받은 절의 비용을 마음대로 유용하여 다른 곳에 써버리자 사헌부에서 그 죄를 묻은 사건이다. 그런데 종안은 문초를 받게 되자 책임을 피하려고 연루된 승인끼리 죄를 뒤집어씌우고 고자질하는데다 都僧統이었던 그 스승 惠眞까지 끌어다 헐뜯고 고소하여, 사건은 일파만파 커지게 되었다. 이 사건의 수습 과정은 불교계에 비판적인 사헌부의 입장을 더욱 고조시

수 있다. 그러나 조문 4의 성립이 드러나는 기사가 잘 보이지 않아 해당 조문의 정확한 성립 연대를 확정할 수 없다. 다만 세종 6년 승록사 혁파의 빌미가 된 사건이나 세종 20년의 위 기사 나)를 볼 때, 조문 4가 세종대를 위시하여 성립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뿐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을사대전 도승 항목의 조문 2와 3은 유사한 규정이 이미 세조대 이전에 성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문 4 역시 명확한 근거 기사는 보이지 않으나, 주지의 전횡을 비판하는 기사들이 세종대에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것을 보아, 관련 내용이 이미 조문으로 성립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을사대전 도승 항목의 조문 2~4에 대해, 해당 규정이 신묘대전 이후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묘대전에는 없고 을사대전에만 수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을사대전 도승 항목의 조문 2~4는 신묘대전 단계에도 이미 성립해 있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미 다 성립해 있었을 도승의 조문 2~4가 신묘대전 「예전」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대체 그 까닭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이 조문들이 신묘대전의 「예전」이 아닌 다른 부분에 실렸을 가능성이다. 을사대전에 수록된 도승 1~4 조문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격이 다른 조문들을 함께 모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조문 1은 도첩을 받으려는, '제도적'으로 세속의 사람들을 위한 규정이다. 도첩 발급은 원래 예조가 담당하던 것이었으므로 조문 1은 「예전」 도승 조항에 가장 적합한 조문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도승의 조문 2~4는 이미 도첩을 받고 출가한 僧 내부의 일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즉, 조문 1과 2~4는 적용 대상 자체가 다른 규정이다. 또한 도승 조문의 내용을 뜯어보면 조문 2는 선시, 3은 주지 임용과 그 임기 및 犯法 처벌, 4는 주지 교체 시 사찰 재산의 인수인계와 배상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켰고, 결국 위 사건이 빌미가 되어 동년 6월 선교양종 체제 하에 36사만 지정되고 승록사가 혁파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양혜원, 2017a 앞의 논문, 175-180면 참조.

그런데 이 중 조문 3은 기사 가)에서 보듯 吏曹의 첩정으로 올라온 사안이며 대부분의 내용이 주지의 임명과 임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내용상 애초에 『吏典』에 실렸을 가능성이 있다. 조문 4는 주지 교체 시 사찰 재산의 인수인계와 그 배상에 대한 내용이므로 『이전』 혹은 『刑典』에 실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현존 신묘대전은 『예전』만 남아있는 영본이므로 다른 부분을 확인할 수 없으나, 조문 3과 조문 4의 내용으로 미루어 주지 임명과 교체에 관한 사안, 혹은 그 관련 처벌을 『이전』이나 『형전』 등 대전의 다른 권에 수록하였을 가능성이 짙다.

이 중 처벌 내용과 관련하여 『형전』에 수록되었다고 보는 추정은 세조 7년 반행한 『경국대전』 『형전』에 僧人推劾條가 있었다는 사실에서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세조는 『경국대전』을 편찬하면서 戶口와 부역, 죄와 처벌 등을 규정하여 백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戶典』³⁰⁾과 『刑典』³¹⁾을 먼저 반포하였다. 이후 예종은 『경국대전』 내용의 많은 부분을 수정하나 『호전』과 『형전』의 내용은 거의 바꾸지 않았다.³²⁾ 그런데 세조대 『경국대전』 『형전』 승인추핵조에는 僧人이 위중한 죄[重罪]를 범하였더라도 京外官은 책임을 族親·隣里人에게 붙이고, 계문한 뒤에 수금하여 추핵한다는 등의 조문이 수록되어 있었다.³³⁾ 이는 세조대 만들어진 『형전』에서 승인에 대한 내용을 따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사실 세조대뿐 아니라 이후의 『경국대전』 『형전』에서도 ‘僧人’을 특기하는 조문이 많이 있다. 다만 독립 조항이 아니라, 내용별로 나누어 해당 조항 아래 ‘僧人’에 대한 조문을 별도로 규정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 도승의 조문 3, 4는 내용상 이 승인추핵조에 실렸을 수도 있고 혹은 『형전』의 다른 조항으로 수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선시에 대한 조문 2의 경우, 내용상 『예전』에 실려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신묘대전 『예전』 어느 곳에도 조문 2를 찾을 수 없어 난감하다. 시험을 통해 승

30) 『世祖實錄』 권21, 세조 6년 7월 17일 辛卯.

31) 『世祖實錄』 권25, 세조 7년 7월 9일 丁未.

32) 『睿宗實錄』 권7, 예종 1년 9월 27일 丁未.

33) 『世祖實錄』 권30, 세조 9년 3월 25일 甲寅.

직자를 뽑다는 내용상 「예전」이 아닌 대전의 다른 곳에 수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도승의 조문 2~4 중 이 선시에 대한 규정은 비교적 오래되고 중요한 조문이라고 볼 수 있다. 국초부터 육전에 수록되어 있었다는 언급³⁴⁾이 있을 뿐 아니라, 당시 식년마다 선시가 치러지고 있었으므로³⁵⁾ 현실적으로 관련 규정이 필요한 사안이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예종의 성향상 僧政 관련 조문을 신묘대전에 수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겠다. 예종은 육전 체제로 간행되지 못한 세조의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간행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즉위 후 바로 『경국대전』의 수정 작업을 진행하는데, 「호전」과 「형전」을 제외하고는³⁶⁾ 세조대의 원형에 비해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院相 金國光에게 전지하기를, “근래에 다시 정한 법은 모두 선왕의 成憲을 폐하고서 따르지 않은 것인데, 옳겠는가?” 하니, 김국광이 대답하기를 “세조께서 일찍이 六典을 詳定하여 여러 해 동안 이루지 못하였고, 오직 호전과 형전만을 겨우 이루었으나 글자를 주조하여 간행한 것은, 대개 옳은지를 시험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폐단이 생기면 고치는 것은 만세에 통행하는 전례입니다. 지난번에 한명회가 불편한 여러 일을 아뢰어서 고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육전은 세조께서 이루지 못한 책이고, 지금 바야흐로 상정하였으니, 비록 간혹 다시 고치더라도 불가하지 않습니다. 服色도 또한 마땅히 다시 정하소서.” 하니, 명하여 「禮典」을 고쳐서 편찬하게 하였다.”³⁷⁾

위 기사에 보이듯, 예종은 스스로 회의할 만큼 법전에 큰 폭의 수정을 가하였다. 특히 「예전」의 변화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예종은 잠저 시절부터 軍額과 無度牒僧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즉위 후 조정에서 논해진 禁僧의 조치는 강경한 편이었다. 예종이 韓明澮와 崔恒 등에게 명하여 禁僧條件을 草하게 했을 때, 법을 어기고 출가한 자에 대한 처벌로 斬刑을 건의하는 것을 보아³⁸⁾ 당시 금승

34) 각주 24).

35) 양혜원, 2019a 앞의 논문, 61면.

36) 『睿宗實錄』 권7, 예종 1년 9월 27일 丁未.

37) 『睿宗實錄』 권6, 예종 1년 7월 5일 丙戌.

38) 『睿宗實錄』 권8, 예종 1년 10월 27일 丁丑.

조건에 대한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이 건의는 너무 심하다 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예종은 『경국대전』 불교 관련 조문들을 수정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종이 『경국대전』에서 고칠 만한 일을 올리라고 하자 한명회가 지적한 4가지 일이 모두寺와僧에 관한 일이었다.³⁹⁾ 그 안에 선시에 대한 조문이 있는 것은 아니나, 예종이 보여준 일련의 경향성으로 미루어 승직자를 뽑는 선시의 조문을 국가의 공식 법전에서 탈락시켰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시에 대한 논란은 『경국대전』의 네 차례 간행 과정과 관련한 실록의 기사에서 별달리 언급되지 않는다. 때문에 신묘대전 「예전」에는 보이지 않다가 을사대전 「예전」에 등장하는 선시에 대한 조문 2는 처음부터 대전에 수록하지 않았다가보다 신묘대전이 아닌 다른 곳에 수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갑오대전을 반행할 때 대전에 실리지 못한 72조는 따로 묶어 『續錄』으로 반포하였다.⁴⁰⁾ 이 시기 『경국대전』 선시의 조문은 대전에는 실리지 못하고 『속록』에 실리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경국대전』의 최종본인 을사대전은, 새로운 법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렸던 수교와 『속록』의 내용을 옮겨 정리한 것이기 때문이다.⁴¹⁾ 따라서 선시의 조문 2는 대전에 실리지 못하고 『속록』에 실렸다가 을사대전에 와서 대전에 수록되면서 도승 조항 아래로 묶였을 가능성이 크다.

요컨대, 신묘대전과 을사대전 「예전」 도승 항목의 조문은 <표 2>와 같이, 전자가 조문 1만 신고 있는데 반해 후자는 조문 1~4를 모두 수록하고 있다. 그 까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조문 1은 네 가지 조문 중 유일하게 내용상 도첩을 주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므로 민을 승으로 만드는 '도승'의 항목에 가장 적합한, 도승의 원 조문이라 할 수 있다. 조문 2 選試에 대한 규정은 원래 대전에 수록되지 못하다가 을사대전 단계에 가서 『續錄』 등의 내용을 모두 대전으로 합칠 때 도승 항목 아래로 실렸을 가능성이 높다. 조문 3, 4의 경우, 임명과 처벌에 대한 내용이 있으므로 원래 「이전」이나 「형전」에 수록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이들 조문은 을사대전 단계에서 僧政

39) 『睿宗實錄』 권6, 예종 1년 6월 24일 丙子.

40) 『成宗實錄』 권38, 성종 5년 1월 2일 戊子.

41) 『成宗實錄』 권168, 성종 15년 7월 3일 丁亥.

에 대한 내용으로 분류하여 한 곳으로 모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選試’, ‘住持’와 같은 새로운 항목을 만드는 대신, 원래 있던 度僧 항목 아래로 모아 함께 수록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결과 을사대전 도승 조항에 속한 조문 2, 3, 4는 ‘도승’이라는 항목명에 포섭되지 않는 내용임에도 널리 ‘승정’ 관계 내용이라는 공통점으로 도승 조항 아래 수록되었다.

한 가지 더 지적할 사항은, 도승 항목의 네 조문들은 승정을 염두에 두고 보았을 때 단계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배열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문1. 도첩 발급 → 조문2. 선시 → 조문3, 4. 주지 임명과 교체]의 과정은 출가 후 도첩을 받고, 도첩을 받은 후 선시를 볼 수 있으며,⁴²⁾ 선시 합격 후 주지에 임명될 수 있는⁴³⁾ 당시 승정 체계를 반영하고 있다. 곧, 도승 항목 아래로 승정 단계를 반영한 관련 조문을 모아 순차적으로 배열해 놓은 것이다.

이상과 같이 ‘도승’ 항목 아래 도첩을 주는 조문 뿐 아니라 僧政 단계를 반영한 조문을 모아 복합적 구성을 이루고 있는 것, 이것이 을사대전 도승조의 특징이다.

2) 도승 항목 4개 조문의 원형

여기서는 도승 항목 4개 조문의 신뢰성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앞서 살폈듯, 『경국대전』은 세조대 편찬을 시작한 이래 간행까지 여러 차례 개수 간행되었다. 또 성종 15년 최종 완성 후 내용 수정이 금지된 이래 『續大典』이 간행되는 영조 22년(1746)까지 무려 260여 년간 조선의 기본 법전으로 확고한 위상을 지니는 동안, 여러 시기, 여러 지역에서 수차례 복각, 간행되었다. 오랜 기간 동일 고서에 대해 시대와 지역을 달리하는 여러 건의 판본이 존재한다는 것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판본간 校勘이 필수적임을 의미하며, 또한 개별 연구자가 참고한 판본에 따라 조문의 글자가 조금씩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고서에서 一, 二, 三이나 十, 干 등 유사한 글자들이 판목의 손상이나 판각의 잘못 등으로 혼동되어 인쇄된 경우들이 종종 있으며, 그런 경우 문맥을 통해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거나 전체 의미상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42) 양혜원, 2019a 앞의 논문, 69면, 82-83면.

43) 成俔, 『慵齋叢話』 卷9.

그러나 『경국대전』은 다르다. 『경국대전』은 우리나라에서 시도된 최초의 종합법전으로, 기존의 『경제육전』처럼 조문 간 내용이 서로 중복되거나 시간을 두고 모순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왕의 수교 전체를 그대로 수록한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모두 정리하고 육전에 부합하게 분류하여 소략하고 함축적 조문들로 이루어져 있다. 더구나 현실의 질서를 규정하는 실용서로서의 법전이기 때문에, 한 두 글자의 차이가 내용상의 큰 차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이미 지적되었듯, 치밀한 고증 없이 법전 조문을 인용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誤字가 있는 조문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장차 무너질 전제 위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⁴⁴⁾

유감스럽게도 『경국대전』의 정본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학계에서 널리 참조되는 『경국대전』의 대표적 판본들에서, 특히 「예전」 도승 항목의 내용은 매우 결정적 誤字가 나타나고 있다.⁴⁵⁾ 따라서 관련 연구들에서 원전의 오자를 잘못 인용하여 치명적 오류의 연구 결과가 양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을사대전 「예전」 도승 항목의 네 가지 조문은 앞에서 <표 2>로 번역문을 제시한 바 있다. 다음은 그 원문에 대해 신묘대전과, 을사대전 여러 판본을 교감하여 얻은 교감문이다. 교감 판본 및 교감 과정에 대하여는 이미 연구가 이루어 졌으므로,⁴⁶⁾ 여기서는 그 정본화한 조문을 제시하고 이를 전제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44) 양혜원, 2018a 앞의 논문, 157면.

45) 위의 논문, 180-187면.

46) 『경국대전』의 판본 종류와 대표적 판본의 선정, 그 특성 및 관련 설명, 도승 조문 교감 등과 관련한 내용은 모두 양혜원, 2018a 앞의 논문에서 충분히 논해졌으므로 여기서는 재론하지 않는다. 이하 『경국대전』 판본 관련 내용은 모두 위 논문의 내용을 전제한 것이다. 참고를 위해 교감에 사용된 책 9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初鑄甲寅字本인 보물 제1521호 『경국대전』으로, 곧 신묘대전이다. ② 타카와 코조[田川孝三] 소장본으로 6권 4책의 목판본이다. ③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초주갑인자본이다. ④ 1603년(만력 31)에 간행된 목판본이다. 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1613년 내사기가 있는 訓鍊都監字本으로 일명 史庫本 혹은 內賜本으로 불리는 본이다. ⑥ 규장각 소장 1668년 간 목판본이다. ⑦ 1721년 芸閣鑄字重印本이다. 이에 더하여 참고를 위해 ⑧ 1785년 간 『大典通編』, ⑨ 1865년 간 『大典會通』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이들 ⑧⑨에 수록된 『경국대전』의 내용은 『경국대전』 최종본인 을사대전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經國大典』 「禮典」 度僧

1. 爲僧者 三朔內告禪惑教宗 試誦經【心經, 金剛經, 薩怛陀】 報本曹【私賤則從本主情願】 啓聞收丁錢【正布三十四匹】 給度牒【過三朔者 族親隣近告官 還俗當差, 知而不告者并罪. ○度牒借者與者 依懸帶關防牌面律論】
2. 禪教兩宗每三年選試 禪宗則傳燈拈頌 教宗則華嚴經十地論 各取三十人.
3. 諸寺住持 兩宗擬數人薦望 報本曹移文吏曹 磨勘差遣 三十朔而遞, 如有所犯 兩宗報本曹 覈實治罪, 犯奸者并坐薦僧.
4. 住持遞代時 傳掌, 有破失物徵納.

위 내용에서도 <표 2>와 같이 보통 글씨는 을사대전 「예전」 도승 항목의 大字 조문이고, 【】의 내용은 小字雙행의 註이며, 조문의 순서대로 1~4까지의 번호를 붙였다. 도승 항목의 조문들에서 『경국대전』 판본마다 글자의 차이가 있는데 위의 □쳐진 글자가 그것이다.

차이가 나는 글자 셋 중 「薩怛陀」나 「拈頌」은 각각 陀羅尼⁴⁷⁾와 「禪門拈頌」⁴⁸⁾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점에 크게 이견이 없는 글자들이다. 문제는 도승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조문 1의 度牒價 ‘正布 三十匹’이다. 지금까지의 조선전기 도첩가 연구 논문들은 20필과 30필이 각각 주장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관련 학자들이 주로 참조하는 판본의 오자⁴⁹⁾와 이를 번역한 대표적 번역서들⁵⁰⁾이 ‘20필’로 잘못 기재해온 결과, 정전가를 ‘二十匹’로 확정하는 경향이 있어왔다.⁵¹⁾ 어떤 경우에는 책마다 20필 혹은 30필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두 가지를 혼란하게 사용한 경우도 있다.⁵²⁾ 이런 혼란의 원인은, 『경국대전』

47) 「薩怛陀」는 관련 학계에서 대체로 楞嚴呪라고 보고 있다(김영태, 1995 「조선전기의 도승 및 부역승 문제」 『불교학보』 32, 10면). 『楞嚴經』 권7에 ‘南無薩怛陀蘇伽多也阿羅訶帝三藐三菩陀寫...’로 시작하는 다라니가 수록되어, 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김기중, 2015 『불교와 한글』, 동국대학교출판부, 210면, 각주 27).

48) 고려 후기 승 眞覺國師 慧謙(1178-1234)이 1226년 편찬한 책으로, 禪家の 古話 1125則과 여러 禪師들의 微·拈·化·別·頌·歌 등을 모아 30권으로 엮은 것이다.

49) 양혜원, 2018a 앞의 논문, 181면.

50) 法制處 譯註, 1978 『經國大典』, 一志社(法制處 譯註, 1993 『經國大典』, 韓國法制研究院으로 再發刊); 韓國精神文化研究院 人文研究室 編, 1985 『譯註 經國大典 翻譯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윤국일, 1986 『경국대전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1990 신서원 영인본).

51) 韓祐勳, 1993 『儒教政治와 佛教』, 일조각; 이승준, 앞의 논문; 민순의, 앞의 논문.

52) 押川信久, 앞의 논문. 押川信久는 이 논문 안에서 정전가 기록의 혼란을 보이고 있는데,

이 완성된 것은 15세기 후반인 성종 15년인데 학계에서 널리 참조하는 책은 그로부터 백 년 이상 떨어진 17세기 혹은 18세기 간행본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17세기에 시행되지 않거나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는 조문의 경우 간간이 誤字가 실리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度僧의 丁錢 규정이다. 그러나 판본 교감 결과 ‘二十四’는 17세기 임란 이후 급하게 간행된 책에서 비롯된 誤字이며, 『경국대전』 도승에 수록된 원래의 정전가는 정포 ‘三十四’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⁵³⁾

곧 위에서 제시한 『경국대전』 『예전』 도승의 내용은, 『경국대전』의 여러 판본을 세밀하게 교감하고 실록 등을 통해 내용을 고증한 도승 항목 4개 조문의 정확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성종 15년(1484) 을사대전의 편찬이 완료되고 이후 글자의 수정이 금지되었을 당시, 도승제가 시행되고 있던 시기 조문의 원형이다. 여기서 을사대전 도승 절차를 간략히 제시하면 ‘승이 된 자는 → 석 달 안에 선종 혹은 교종에 신고하여 → 『心經』 『金剛經』 『薩怛陁』 암송을 시험하고 → 예조에 보고하고 왕에게 아뢰어 → 정전으로 정포 30필을 거두고 → 도첩을 발급한다’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4개 교감 조문 가운데 도첩 발급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문 1에 대해 살펴보자.

4. 『경제육전』과 『경국대전』 도승 내용의 차이

이상에서 『경제육전』에서 『경국대전』까지 이 법전들이 규정하는 도승 조문을 확인하고 도첩 받는 절차가 수록된 『경국대전』 조문을 명확히 하였다. 그렇다면 『경국대전』 도승의 조문은 『경제육전』과 내용상 어떻게 다른가?⁵⁴⁾

서론에서는 총독부 교감 『經國大典』을 인용하며 정포 20필로, 본문에서는 실록의 『경국대전』 인용기사를 참조하며 정포 30필로 적고 있다. 관련하여 押川信久는 각주 26)에서 조선후기 『大典通編』과 『大典會通』의 기록 30필과 총독부 교감본 기록 20필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아마 책마다 정전가가 다를 수 있으나,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3) 양혜원, 2018a 앞의 논문, 183-185면.

54) 도승 조항의 조문들은 용어 하나하나 내지 조문의 구절마다 함축된 맥락과 고증할 내용

기존의 법전 연구들에서 지적하듯 조선의 첫 법전인 『경제육전』이 좀 더 고려적 유제를 많이 가지고 있고 『경국대전』이 좀 더 조선적 색채를 띤다면 각 법전에서 규정하는 도승에도 그 성격이 반영되었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우선 도승의 내용에 충실한 조문 1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도첩을 주는 절차인 『경국대전』 도승의 조문 1은 여러모로 『경제육전』 규정과 다르므로 앞에서 살폈던 그 성립 과정과 의미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앞서 제시했던 『경제육전』과 『경국대전』 교감 조문에 의거한 원래의 도승 절차를 간략히 제시해 두면 다음과 같다. 『경제육전』에서는, 양반 자체 중에서 스스로 승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 부모나 친족이 승록사에 신고하고 → 예조에 보고하여 왕의 허락을 득하고 → 정전으로 오승포 100필을 납부한 후 → 출가를 허락받는다고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才行을 시험하였다. 『경국대전』에서는, 승이 된 자는 → 석 달 안에 선종 혹은 교종에 신고하여 → 『心經』 『金剛經』 『薩怛陁』 암송을 시험하고 → 예조에 보고하고 왕에게 아뢰어 → 정전으로 정포 30필을 거두고 → 도첩을 발급한다고 하였다.

위 도승 절차와 관련된 조문을 편의상 상응하는 내용별로 짝 지어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3〉 『경제육전』과 『경국대전』의 도첩 발급 조문 비교

조문 번호	『경제육전』	no	『경국대전』	조문 번호
1	兩班子弟 自願爲僧者	①	爲僧者	1
	父母親族具錄辭因	②	三朔內	
	告僧錄司 轉報禮曹 啓聞取旨然後	③	告禪或教宗 報本曹【私賤則從本主情願】啓聞	
	納丁錢五升布一百匹	④	收丁錢【正布三十四匹】	
	給度牒 方許出家	⑤	給度牒【過三朔者 族親隣近告官 還俗當差. 知而不告者并罪. ○度牒借者與者 依懸帶關防牌面律論】	
2	凡僧尼 試才行給度牒 許令削髮	⑥	試誦經【心經, 金剛經, 薩怛陁】	

이 많다. 따라서 각 조문의 의미를 본고의 한정된 지면에서 모두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여, 일차적으로 기본적인 변화상을 지적하는 데까지만 서술한다. 조문 내용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별도로 논하고자 한다. 불교의 選試 규정인 조문 2에 대하여는, 양혜원, 2019a 앞의 논문 참조.

위 표의 왼쪽은 2장에서 제시했던 『경제육전』 도승 관련 조문 1과 2를 ①~⑥의 내용 단위로 잘라 배열한 것이며, 오른쪽은 앞 장에서 제시한 『경국대전』 도승의 조문 1을 역시 ①~⑥의 내용 단위로 잘라 배열한 것이다. 【 】의 내용은 앞에서와 같이 小字雙行註이다. 위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자.

①은 도승 대상자에 대한 규정이다. 이 곳은 가장 크게 변화하는 부분이기도 하여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①에서의 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제육전』에서 ‘兩班子弟 自願爲僧者’를 규정했던 것과 달리 『경국대전』에서는 그저 ‘爲僧者’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조문상 『경제육전』의 ‘양반 자제’라는 신분 규정이 없어지고 있다. 조선 초의 ‘양반’은 조선 후기적 양반과는 달리 문무 관료를 총칭하는 것으로, 극소수의 관료집단을 가리킨다.⁵⁵⁾ 즉, 『경제육전』 단계에서 도승 대상을 소수의 관인층 자제에 한정하다가, 『경국대전』 도승에서는 신분 제한 관련 문구가 사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조문만 놓고 보았을 때 이러한 변화는 꽤 흥미로운데, 얼핏 보면 최상층 신분에게만 주어졌던 도승의 기회가 賤에게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⁵⁶⁾ 그러나 다음 장에서 후술하듯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음으로 변화된 부분은 『경제육전』의 ‘自願爲僧者’가 『경국대전』에서 ‘爲僧者’로 바뀐 것이다. 이 부분을 해석한다면, 전자는 ‘스스로 승이 되기를 원하는 자’이며, 후자는 ‘승이 된 자’이다. 기존의 『경국대전』 번역본 중에는 승이 ‘될’,⁵⁷⁾ ‘되는’⁵⁸⁾ 자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러한 해석은 뒤이어 나오는 ②~③에서 ‘3개월 내[三朔內]에 선종 혹은 교종에 신고’하라는 내용이 나오므로 수용하기 어렵다. 만약 이를 ‘승이 될/되는 자’라고 해석한다면 무엇으로부터 3개월 이내인지가 모

55) 양혜원, 2017b 앞의 논문, 145면.

56) 이에 대해 민순의, 2016 『조선전기 도첩제도의 내용과 성격』 『韓國思想史學』 56, 37면에서는 “계층을 망라하여 모든 인민에게 출가의 기회가 개방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57) 윤국일, 앞의 책.

58) 法制處 譯註, 앞의 책.

호해진다. 그러므로 『경국대전』 도승 조문 1의 흐름상, ‘승이 된 자는 3개월 내에 선종 혹은 교종에 신고하고 본조에 보고하여 계문’한다고 해석하여 ‘승이 된 지 3개월 안’에 위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자연스럽다.

①에 대해 위 두 가지 내용을 종합하여 도승 대상을 살펴보면, 『경제육전』은 ‘양반 자제 중 스스로 승이 되기를 원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경국대전』은 ‘승이 된 자’로 단순히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문의 외형으로만 보았을 때, 도승 가능한 신분적 제한을 높게 설정해 두었다가 『경국대전』에서 이를 크게 완화한 것으로 비치기도 하나, 이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⁵⁹⁾

②~③을 함께 보면, 『경제육전』에서는 “부모나 친족이 사유를 갖추어 승록사에 신고하고 예조에 보고하여 왕에게 아뢰어 허락”을 받으라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국대전』에서는 “석 달 안에 선종 혹은 교종에 신고하고 예조에 보고하여 왕에게 아뢰다”라고 하였다. 『경국대전』에서 변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고 기관의 차이가 눈에 띄는데, 이는 승록사가 세종 6년(1424)에 혁파된 후⁶⁰⁾ 선종과 교종의 兩宗 체제로 전환된 상태이므로 도승하려는 자는 승록사가 아닌 선종이나 교종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신고 주체는 『경제육전』에서 ‘부모나 친족’으로 명시한 데 비해 『경국대전』에서는 정확한 명시가 없다. 그러나 다음 장에 후술하듯, 度牒式의 내용을 보아 부모나 친족이 신고하던 규정이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④에서는 丁錢價 규정이 나오는데, 『경제육전』에서는 ‘오승포 1백필’을 정하였다가 『경국대전』에서 ‘정포 30필’로 바뀌고 있다. 『경국대전』의 정전가 규정은 앞 장에서도 지적했듯, 학계에서 주로 참조하는 『경국대전』 판본 誤字 등의 문제로 정전가와 관련한 거의 모든 선행연구가 오류를 내고 있어⁶¹⁾ 관련한 검토가

59) 도승이 관인 자제인 양반 자제 혹은 서민·친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하여는 「公私賤爲僧者禁防條件」과 관련하여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公私賤爲僧者禁防條件」에 대해 일부나마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로는 韓祐勳, 앞의 책; 押川信久, 앞의 논문이 있다.

60) 『世宗實錄』 권24, 세종 6년 4월 5일 庚戌.

61) 이 부분은 얼핏, 정전가가 100에서 30으로 크게 변동한 듯 보이며, 관련한 기존 연구들에서도 이승준, 2000 『朝鮮初期 度牒制의 運營과 그 推移』, 『湖西史學』 29 이래 정전가가 대폭 하락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문에 대한 실록 및 법전의 誤字, 연구자

필요하다.

⑤에서는, 『경제육전』은, 이상의 신고 과정과 정전 납부의 절차를 마친 후에야 도첩을 발급하여 출가를 허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경국대전』 도승은 ‘위승자’, 즉 이미 출가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전을 징수하면 도첩을 발급하면서 절차가 마무리된다.

⑥은 도승자의 자질 검증과 관련한 조문이다. 『경제육전』에서는 도승 시 무엇을 어떻게 시험하였는지 명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던 조문 2 ‘試才行’ 규정이⁶²⁾ 『경국대전』에서는 시험 과목과 방식까지 구체화되어 드러나고 있다. 『경제육전』 도승 조문 2가 조선 초부터 원래 행해졌던 것인지 명확치 않은 측면이 있기는 하나, ‘재행을 시험[試才行]’하는 절차가 있었다면 『경국대전』 도승 조항의 조문 1과 유사한 형태일 것이라 본다. 이 조문을 통해, 『경국대전』은 도첩승이 되기 위한 시험 과목을 법으로 정한 셈이다. 『경국대전』 「예전」의 다른 부분에서 문무과나 잡과 등의 시험 과목을 정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도승이 왜 「예전」에 실렸는가에 대한 일말의 단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즉, 『경국대전』 단계에서 도승하려는 자는 출가한 후 선종이나 교종에 신고하여 『心經』, 『金剛經』, 『薩怛陁』의 암송을 시험하여야 한다.

조선시대에, ‘도승’과 같은 ‘승을 배출하는’ 제도에서 법으로 시험 과목까지 지정하고 있는 상황은 흥미롭다. 도승의 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도승자의 사회적 위상과 관계가 있다. 적어도 『경제육전』 단계까지 도승자는 환속 시 초입사례를 면제받아 과거 합격자에 준하는 법적 대우를 받았으며⁶³⁾ 개국 이래 16세기 초 연산군대까지 불교의 選試, 즉 僧科로 僧官을 선발하고 있었다.⁶⁴⁾ 도승 과정에서 과목을 명시하고 이 같은 시험을 치르는 까닭은 승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검증하

의 誤讀이 거듭되어 온데다 당시 통용 화폐 및 정포 가격 등과 관련하여 고려할 문제들이 적지 않은바, 이는 별고에서 상세히 논하고자 한다.

62) 양혜원, 2017b 앞의 논문, 132-134면.

63) 양혜원, 2019b 「조선전기 승직의 위상 변화와 그 역사적 의미: 환속 승직자 서용 규정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40, 218-219면. 이 환속자 서용 규정은 『경국대전』에 수록되지 못하고 폐지된다.

64) 양혜원, 2019a 앞의 논문, 78-79면.

기 위함일 뿐 아니라, 이들 도승자가 이후 승과 응시 대상이 되므로 마치 식년 문과에서 향시를 치러 1차적으로 응시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과 유사하게 기능하였던 것이다.⁶⁵⁾ 위 세 과목의 암송시험[誦經]을 통과하고 도첩을 받은 도첩승은 <표 2>에서 제시한 『경국대전』 도승 조문 2에서 규정하고 있는 選試에 응시할 수 있었으며, 선시의 시험은 선종과 교종에서 1차로 초시를 보인 후 2차로 선교의 전문적 과목으로 '講經'을 시험하여 최종 60명을 선발하였다.⁶⁶⁾ 조문 1의 도첩 발급 절차는 엄격하게 말해 조문 2의 선시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이 법전에 지정된 과목의 송경을 시험함으로써, 선시 응시 대상자를 가리는 1차적 거름망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들 도첩을 발급받은 후 승과에 합격한 僧人은 국가로부터 爵秩을 부여받는 존재였다. 이를 통해 한 가지 지적할 점은, 『경국대전』 도승이 위와 같이 세 과목의 송경을 시험하기도 하고 승과를 염두에 둔 제도이기도 하였다면, 과연 '양반 자제'라는 글자를 삭제한 것이 도승의 신분 제한을 없애고 친구에게의 기회 확대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결국 당시 시행되던 도승제의 숨은 전제가 무엇인지 간파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는 도첩식을 분석하면서 다시 살피기로 한다.

이상의 『경국대전』 ①~⑥의 내용을 검토해 보았을 때, 『경국대전』 도승 항목의 조문 1에서 글자상으로 드러나는 도첩 발급 대상에 대한 규정 변화는, 첫째로, 조문상 '양반 자제'라는 신분 규정이 사라지고 도승할 자는 '爲僧者', 즉 승이 된 자이다. 둘째로 신분 상관없이 정진가는 '정포 30필'이다. 셋째로, '試才行'은 지정된 세 과목 『心經』, 『金剛經』, 『薩怛陁』의 암송 시험으로 구체화 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변화는 조문 '글자상'의 차이일 뿐, 시행 원리가 변화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미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경국대전』 도승 항목 조문 2의 선시 운영 방식도 조문이 변화한 것처럼 보이거나 실제로는 국초

65) 위의 논문, 68-70면.

66) 위의 논문, 81면.

『경제육전』 단계에서 시행하던 선시 운영의 원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⁶⁷⁾

따라서 『경국대전』 도승 항목 조문 1을 살펴볼 때 위 3가지 중, 운영 원리상 변화한 것과 변화하지 않은 것을 가리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검토 과정이 번거로운 정전가 관련 규정은 별고를 기약하고, 도첩을 받는 시험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확한바, 아래에서는 ‘양반 자제’가 사라지고 그저 ‘위승자’로 제시되는 문제에 대해 도첩식과 더불어 상세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5. 도첩 발급 조문의 성격과 度牒式의 의미

『경제육전』과 『경국대전』 도승 과정을 비교했을 때 원리상 가장 큰 변화는, 여러 절차를 마무리한 후 도첩을 받고 나서야 출가를 허락하던 『경제육전』 방식에서, 승 가운데 도승을 신청한 자가 여러 절차를 거쳐 도첩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경국대전』 방식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이다. 이 『경국대전』 도승에서는 이전에 비해 도첩승을 허가하는 데 있어 규정상 큰 질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경제육전』은 양반 자제라는 신분적 규정과 오승포 1백 필의 정전 규정을 두고 우선적으로 그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도첩을 주어 출가를 허락한 바 있다. 도첩승이 될 수 있는 일차적인 기준은 세속의 신분과 경제력에 있었던 것이다. 이에 반해 『경국대전』 규정은 특별한 신분 제한의 문구가 사라지고 이미 출가한 자의 佛經 암송 여부를 우선 시험하고 있어, 도첩 발급의 일차적 기준을 爲僧者의 자질에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경국대전』에서는 ‘이미 출가한 자’를 대상으로 송경 시험과 정전 징수 등을 통해 도승의 자격을 가리되, 석 달 이내에 도첩이 나오지 않으면 환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승 가운데 도첩을 받은 ‘度牒僧’과 도첩을 받지 못한 ‘無度牒僧’이 구분된다.

신분과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던 출가 풍속은 고려시대는 물론 조선전기까지 지속되었고, 출가에 대한 불교 교리적 제한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⁶⁸⁾

67) 위의 각주.

개개인의 출가를 국가가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경제육전』에서는 까다롭고 엄격한 자격 규정을 두고 금지 조문과 처벌 조문도 세밀히 규정하여 출가를 억제하고 도첩승의 경계를 신분과 재력, 자질 등의 세속적 기준을 동원하여 좁게 한정하고자 하였다.⁶⁹⁾ 애초에 도첩의 대량 발급은 염두에 두지 않은 조치였는데, 그 시행 효과는 미미하였고 출가자 수도 여전히 증가일로에 있었다.⁷⁰⁾ 도첩을 제한적으로 발급하여도 출가자 수는 과다하고, 이들이 관례적으로 면역되는 폐단이 지속되었던 것이다.⁷¹⁾

이에 『경국대전』 도승의 도첩 발급 규정은 개인의 출가를 국가가 완벽히 통제할 수 없는 현실 위에 성립하였다. 조선은 이제 ‘이미 출가한 자’ 가운데 자질을 시험하여 도첩을 발급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개개인의 ‘출가 통제’가 아니라 현실의 과다한 승도 수를 인정하고, 승 가운데 도첩승과 무도첩승의 구분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되었다. 즉, 『경국대전』 도승은 도첩소지 여부로 ‘제도적 승’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자한 것이다. 이들이 이른바 ‘도첩승’이다. ‘현실’에 존재하던 승은 도첩승일 수도 있고 무도첩승일 수도 있다. 그러나, 도승이라는 ‘제도적 관점’ 하에서 도첩승만이 승이 되며, 무도첩승은 제도적으로 승이 아닌 ‘민’이 되는 것이다. 이같은 인식은 앞서 언급한 『經國大典註解』에서 度僧이란 ‘민’을 ‘僧’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설명에서도 잘 드러난다. 실제로 『경국대전』 내에서 법적으로 민과 僧은 확실히 구분되고 있다.⁷²⁾ 따라서 학계 일각의 오해처럼 모든 승이 도첩을 가졌다거나, 무도첩승은 승이 아니라는 단순한 시각으로 사료를 읽으면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경국대전』 『예전』 안에는 도첩과 관련하여 도승 1의 조문 외에도 한

68) 불교 교리상 부모의 허락을 득하고 세속에서 죄를 짓고 쫓기다가 승단으로 도망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출가를 제한하지 않는다.

69) 양혜원, 2017b 앞의 논문, 152면.

70) 양혜원, 2018 『조선 초 도승제(度僧制) 강화의 역사적 의의』 『역사비평』 123, 294면.

71) 양혜원, 2013 앞의 논문, 11-12면.

72) 조우영, 2003 『『경국대전』의 신분제도』, 서울대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제3장 2절 참조.

가지 규정이 더 있다. 바로 ‘度牒式’이 그것이다. 『예전』 말미 用文字式 뒤에는 여러 가지 ‘式’이 실리고 있는데, 국가에서 내리는 각종 문서 형식을 실어 놓은 일종의 ‘官用文書 書式 모음’으로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도첩식이 수록되어 있다. 『경국대전』의 도첩식은 신묘대전과 을사대전 어느 판본을 막론하고 『예전』 後尾가 결락되지만 않았다면 모두 동일한 식으로 수록되어 있다.⁷³⁾

도첩식은 『경국대전』 뿐만 아니라 이미 『경제육전』에도 수록되어 있었는데, 과거급제자와 같이 승록사가 예조에 보고, 예조가 대간에 이관, 대간이 서경 후 발급하였다.⁷⁴⁾ 다만 『경제육전』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그 도첩식의 원형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도첩식이 발급되던 당시의 서식은 『경국대전』 『예전』 도첩식으로만 알 수 있을 뿐, 그 실물 자료도 아직 드러난 것이 없다. 이는, 도첩식이 조선전기에 발급되어 시간이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의 예로 보아 소지한 승이 입적할 시 관에서 회수하여 없애는 것이 원칙이었으므로⁷⁵⁾ 세간에 남은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도첩식을 발급받아 소지한 승이 ‘度牒僧’이다. 곧, 앞서 서술한 도승의 제도를 이해했을 때, 도첩을 발급하는 사회에서는 이 도첩의 소지 여부에 따라 승 가운데 도첩승과 무도첩승이 존재하며 이는 제도상으로 보았을 때 승의 신분, 나이, 학식 등에 선행하는 가장 1차적 구분이라 할 수 있겠다.

아래 제시하는 내용이 『경국대전』 을사대전에 실린 도첩식이다.⁷⁶⁾

73) 참고로, 『大典通編』, 『大典會通』에는 “今廢”라 하여 해당 시기 도첩식이 폐지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74) 『世宗實錄』 권12, 세종 3년 7월 2일 壬戌. 관련한 설명은 양혜원, 2017a 앞의 논문, 195-197면 참조.

75) 竺沙雅章, 1979 『宋代賣牒考』 『佛教史學研究』 23-1: 伊藤東涯(礪波護·森華 校訂) 2006 『制度通』 1, 平凡社, 276면.

76) 신묘대전과 을사대전에 실린 도첩식은 동일하다. 다만 신묘대전은 마지막 두 행에서 ‘... 正郎押 佐/郎押’으로 행갈이 지점(/)에 차이가 있다.

				教									度
				依				啓					牒
押	牒	年	者	允	年	乞	告	過	本	外	父	學	禮
	判	印		敬	月	出	內	准	曹	祖	某	生	曹
佐	書	月		此	日	給	男	禪		某	職	某	牒
郎	押			移	某	度	某	宗		職	某	年	
押		日		關	承	牒	願	同教		某		某	
	參			該	旨	據	納	宗		本		甲	
	判			司	臣	此	丁	呈		某		本	
	押			收	某	照	錢	該		官		某	
				訖	奉	遵	出	某				官	
	參			丁		舊	家	處					
	議			錢		例	爲	住					
	押			合		具	僧	某					
				給		本	名	職					
	正			度		於	某	某					
	郎			牒		某	伏	狀					

〈그림 1〉 『경국대전』 「예전」 수록 도첩식

위 도첩식은 첩의 첫 머리부터 도첩을 받는 자가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위 식은 戶口式보다 간략한 형태로 아버지와 외할아버지의 職役을 확인하며, 도첩 발급 대상자는 ‘學生’이다.

이 시기 ‘學生’이란 儒學과 함께 成均館이나 四學, 鄉校의 생도를 의미했고 넓은 의미로는 儒生과 같이 쓰였다. 이들 학생이 司馬試나 文科에 나갈 때에는 幼學으로 불렸다. 이들은 양반의 자제로부터 良人上層에 이르는 부류였다.⁷⁷⁾ 이렇게 보았을 때 도첩을 받는 자를 ‘學生’으로 지칭하는 이 도첩식이 과연 賤에게 발급을 전제하였는지 의문이다.

곧 『경국대전』 도승의 도첩 조문이, ‘양반 자제’라는 문구가 삭제되면서 일견 위로는 양반 자제에서 아래로는 公私賤까지 도첩 발급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처

77) 최영호, 1984 「幼學, 學生, 校生考」 『歷史學報』 101, 19면; 최승희, 1989 「朝鮮後期 ‘幼學’·‘學生’의 身分史的 意味」 『國史館論叢』 1, 116-117면.

럼 보이지만, 실제로 조문에서 제시된 송경 시험에 공사천이 통과할 수 있었겠는가, 도승자는 승과를 통해 승관이 될 수 있는 존재인데 이를 賤으로 확대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의심에 더하여, 이 도첩식은 진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위 『경국대전』 도첩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첩을 발급받는 자를 ‘학생’으로 규정하고 父와 外祖의 벼슬을 확인하는 이상, ‘賤’에게 이 식을 주었겠는가는 매우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 학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이 누구인가를 생각한다면, 적어도 천은 상정하기 힘들다고 본다.

오히려 이 도첩식은 도첩을 받은 ‘승’을 ‘학생’으로 규정하여 그들이 ‘免役’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첩이 면역을 가능하게 해주는 증빙임은 익히 알려져 있으나, 『경국대전』 내에서 명시적으로 도첩을 가진 자에게 역을 면해준다고 직접적으로 규정한 조문은 없다. 그럼에도 이 식의 ‘學生’을 통해 해당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유의미하다.

결국 『경국대전』 도승의 조문 1이 양천 신분 모두에게 도첩을 줄 수 있도록 성립되기는 하나,⁷⁸⁾ 15세기 후반 조선의 현실은 여전히 도첩은 鄉驛吏 및 公私賤口에게 발급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관념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위 도첩식에서 드러나는 신고 주체는 도승하려는 자의 부모이다. “某處住某職某狀告內 男某願納丁錢出家爲僧 名某伏乞出給度牒...”은 ‘모처에 사는 모직 아무개의 장고에, 『아들 아무개가 정전을 납부하고 출가하여 승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를 아무개는 엎드려 바라건대 도첩을 출급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라고 하여, 승 본인이 아닌 그 부모가 신고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따라서 <표 3>에서 살핀 『경제육전』 ②의 내용이 『경국대전』에서 보이지 않고 있더라도, 기존의 관례를 이어 부모나 친족이 신고하는 것으로 본다.

아울러, ‘男某’라는 내용과 ‘僧’이라는 용어를 통해 조선에서 도첩은 오로지 남성의 출가자에게만 발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⁷⁹⁾ 이는 앞서 식의 첫머리에서 도

78) 『經國大典』 『禮典』 度僧 “...(雙行註)私賤則從本主情願...”

79) 僧과 尼에 대한 사료 및 법제상 용례와 의미는 양혜원, 2017a 앞의 논문, I 장 2절 『出家者를 지칭하는 용어들』 참조. 僧은 통상 남성 출가자를 지칭하며, 법전에서는 더욱 명확하다.

첩 발급 받을 사람이 ‘학생’으로 규정된 것과 함께 고려한다면, 여성 출가자인 尼에게 발급될 수 없는 식임을 알 수 있다.⁸⁰⁾

한편, 위 도첩식을 볼 때 또 다른 큰 특징 하나를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위 『경국대전』에 규정된 도첩식에는 도첩을 받을 자의 ‘승으로서의 정보’가 아닌, ‘세속 정보’를 중점적으로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첩을 받는 자의 세속 이름, 세속 나이 및 本官을 적고 父系와 母系의 직역을 확인하여 신분을 밝히도록 한 것은 도첩을 발급해 주는 국가의 관심이 해당 출가자의 세속적 배경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위 도첩식은, 도첩을 받을 승이 된 자의 출가자로서의 이름, 출가한 절, 출가시킨 師僧, 具足戒를 받은 戒壇이나 戒師, 法師 등에 대한 불교 관련 정보를 전혀 기록하지 않으며, 관련 사실에 대해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 제도적 출세간의 증빙서인 도첩에, 출세간으로서의 정보는 거의 기재되지 않으면서 세간에서의 정보만 수록되었음은, 이 식이 세속에서 의미 있는 증빙임을 뜻한다.

이러한 도첩식의 정보는 이 시기 조선이 출가자의 어떤 면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지 드러낸다. 즉 도첩은 불교 교단이 아닌 국가에서 발급되는 문서로, ‘학생’을 받을 만한 계층의 도승을 증명하여 免役의 근거로 사용되는 문서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조선전기의 도승 제도는 출가자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출가하든 누구에게 具足戒를 받은 문서상 상관하지 않으며,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도첩을 발급받으면 되는 제도인 셈이다. 출가자의 세속 정보를 중심으로 한 도첩 규정은 조선의 도첩제가 갖는 독특한 특징으로 생각된다. 이는 향후 동시기 주변국과의 비교를 통해 소상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⁸¹⁾

80) 조선은 국초부터 수절하는 과부가 아닌,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출가를 법으로 금지하였다(양혜원, 2017b 앞의 논문, 140면).

81) 설사 이 시기 불교계 내에서 구족계를 주는 절이 정해져 있었다 하더라도, 불교계 내부의 일들은 국가의 법제상에 거의 드러나 있지 않다. 국가에서 승을 파악하는 것과 별도로, 조선시대 불교계 내에서 어떤 식으로 승을 배출하고 있었는지는 향후 구명할 필요가 있는 문제이다. 이는 무도첩승의 존재와 더불어 조선시대 승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주제이다.

6. 맺음말

이상에서 『경국대전』에 수록된 도승의 정확한 조문을 확인하고 그 내용과 도첩식을 살펴보았다. 조선의 도승제는 고려 후기 도승제의 연장선상에서 『경국대전』 완성기까지 논의가 이어진다. 특히 정전과 결합된 도첩의 발급은 고려 공민왕대에 성립하여 15세기에 운영되고 16세기에 치폐를 거듭하다 명종대 문정왕후의 죽음과 함께 공식적 제도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경국대전』에 수록된 ‘정전 납부 후 도첩 발급’을 수반하며 ‘세속적 기준’으로 도승을 제한하는 방식은 고려말에서 조선전기에 한시적으로 시행된 독특한 제도이며, 주변국과 비교했을 때도 그 특성이 두드러지는 편이다. 특히 조선은 도첩승의 세속 지위, 신분적 함의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국대전』 도승의 제도는 승의 출가 의미나 범통 등 불교 내부적 사안에 관여하지 않으며, 세속의 통치 질서에 필요한 정보만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결국 『경국대전』 도승제는 출가 자체보다 현실의 과다한 출가자 수를 인정하고 도첩승과 무도첩승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쪽으로 전환해 갔다. 또한 『경제육전』에서 도첩에 신분적 함의가 강하다가 차츰 약해지는, 조선전기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도승 조문은 짧으나, 조선전기에 이와 관련한 논점은 신분 및 군역 등과 관련하여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만약 조선사회가 고려와 다른 방향으로 변화해 갔다면 이에 대한 고찰이 필수적이며, 이는 차차 진행할 후속의 연구 과제를 기약하기로 한다.

주제어 : 경국대전(經國大典), 신묘대전(辛卯大典), 을사대전(乙巳大典), 승(僧), 도승(度僧), 도첩(度牒), 도첩식(度牒式)

투고일(2020. 4. 30), 심사시작일(2020. 5. 15), 심사완료일(2020. 6. 3)

〈Abstract〉

The Establishment and Implication of The Provision on *Doseung* in
Gyeongjukdaejeon of Joseon Period

Yang, Hye Won *

This paper examined the structure and details of the legal provision on *doseung*(度僧) in *yejeon*(禮典) of *Gyeongjukdaejeon*(經國大典), and studied the clause on the issuing of *dochup*(度牒) and the form of *dochup*.

The legal provision on *doseung* of Joseon was discussed and established in the extension of those of late Goryeo, which was documented in the first and second code of Joseon, *Gyeongjeyukjeon*(經濟六典) and *Gyeongjukdaejeon* respectively. *Gyeongjukdaejeon* exists up to now in the two versions that are composed of *Sinmyodaeyeon*(辛卯大典) enforced in 1471 and *Ulsadaeyeon*(乙巳大典) enforced in 1485.

The legal provision on *doseung* in *yejeon* of *Sinmyodaeyeon* comprises of the only one clause on issued *dochup*. It established simply the process of permitting “the people to be Buddhist monk,” which is the literal meaning of the chinese characters “*doseung*”.

However the provision on *doseung* in *yejeon* of *Ulsadaeyeon* has additional three additional clauses composed of *seungkwa* that was the national examination to select Buddhist monk bureaucracy, the appointment of *juji* that was chief Buddhist monk at a temple, and the damage and compensation of the wealth of the temple where *juji* resided. It indicates that the previous simple provision on *doseung* evolved into a complex one including the main regulations on managing the institution of Buddhist monk. And the order of the four clauses in the code represented the promotional procedure of the monk institution composed of leaving secular home, getting the certificate of *dochup*, becoming a Buddhist monk bureaucrat, being appointed to *juji*, and finishing the term of *juji* sequentially. These complex composition of the provision is the distinct feature of the provision on *doseung* in *Ulsadaeyeon* revised from *Sinmyodaeyeon*.

* Associate Researcher, Academy of Buddhist Culture, Dongguk University.

On the other hand, this paper collected and compared several editions of *Ulsadaejeon* published at different times, and restored the full provision on doseung, enacted in 1485, by correcting the ambiguous and fragmented provision on doesung in the several editions. On the basis of this restoration, I found that the regulation of *Gyeongjejukjeon* permitting the highest class only to become a doseung was removed in *Gyeongkukdaejeon*. But it must be a mere difference in the literal expression, not to be interpreted as a real change of the enactment. Because the official form of dochup issued to Buddhist monks in Joseon documented in *Gyeongkukdaejeon* granted them the status of “hakseng(學生)” which could be given exclusively to the highest class yangban (兩班). Thus dochup can hardly be regarded to have been given to the low class.

A further investigation of the official form of dochup reveals additional distinct features. It contained the information of the public posts of their parental lines, but nothing about such important information in Buddhist terms like a monastic name, the first temple where the monk was accepted after leaving the secular home, the temple where the monk resided, the teacher of the monk, and etc. Thus it can be inferred that dochup was a sort of the certificate that confirmed the high secular status bestowed from their parents, and released them from the duty of the statute compulsory labor by providing them the status of hakseng. Dochup of Joseon carried only the information of their previous secular status, nothing of any main information as a monk. Consequently it has more of a secular meaning than of Buddhist sense despite being issued to the monks. It was the distinct feature of dochup in Joseon.

Key Words : *Gyeongkukdaejeon*(經國大典), *Sinmyodaeyeon*(辛卯大典), *Ulsadaejeon*(乙巳大典), become a Buddhist monk, the legal provision on doseung(度僧), dochup(度牒), dochupsik(度牒式)